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50
----------	-----------

제안년월일 : 2015년 12월 17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지체, 뇌병변이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와 시각장애와 신장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2015.8.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장애인 심부름센터”임)간 이용요금 차이에 따라 많은 민원들이 발생됨에 따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이용 요금을 “장애인 콜택시”이용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별표 4]에서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2015.8.3.자로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시설 및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변경(제명, 안 제1조, 제4조)
- 나. 시각장애와 신장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을 “이동서비스”와 “생활지원서비스”로 이원화하여 규정(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시설”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을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으로 한다.

제4조 중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시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의 이용요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생활지원서비스를 추가하여 이용할 경우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규칙”에 의한 이용요금을 추가한다.

수정안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u>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시설</u> <u>지원 조례안</u></p>	<p><u>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u> <u>지원 조례안</u></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일상생활 및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u>장애인 생활·이동지원시설</u>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일상생활 및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u>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u>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에게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p> <p>② 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u>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u> 해야 한다.</p>	<p>제3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에게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p> <p>② 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u>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u> 해야 한다.</p>
<p>제4조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된 장애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제2호아목에 따른 <u>장애인 심부름센터</u>를 지원대상으로 한다.</p>	<p>제4조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된 장애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제2호아목에 따른 <u>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u>를 지원대상으로 한다.</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서 규정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의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 제공 을 위한 사업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p>제5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원안과 동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안과 동일> 2. <원안과 동일>
<p>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시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의 이용요금이 「서울특별시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 16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이 용요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시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의 이용요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 1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생활지원서비스를 추가하여 이용할 경우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규 칙”에 의한 이용요금을 추가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일상생활 및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게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에게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된 장애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제2호아목에 따른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시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의 이용요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생활지원서비스를 추가하여 이용할 경우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규칙”에 의한 이용요금을 추가한다.

③ 보조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생활·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사용·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 대하여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